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검 토 보 고

1.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가. 제출일자 : 2002년 3월 7일

나. 회부일자 : 2002년 3월 8일

3. 제안이유

21C 문화·관광 시대에 대비한 비즈니스 및 국제교류 공간인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의 변경과 2004년도 제85회 전국체육대회 개최에 따른 **「다목적체육관건립」** 및 종자생산시험장 시험포가 공공용지(도로)로 편입되어 그 면적에 상응하는 **「시험포 취득」**사유가 발생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규정에 의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함.

4. 주요골자

□ **재산의 취득**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 변경≫

○ 위 치 : 청주시 상당구 주중동 500-11번지외 243필지

○ 규 모 : 579,056㎡(244필지)

○ 사업기간 : 2000~2010

○ 사 업 비 : 1,378억원(보상비 497, 용역비 21, 공사비 860)

※ **도비 : 518억원**, 민자·외자 등 860억원

○ 사업변경내역

- 규 모 : (당초) 403,306㎡ (변경) 312,599㎡
- 사업비 : (당초) 160억원 (변경) 518억원

※ 당초예산 160억원은 '99년 (50억원), 2002년 (110억원)확보

≪다목적 체육관 건립≫

○ 위 치 :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808-6번지 3,688㎡

○ 규 모 : 연건평 2,800평정도(지하2층, 지상5층)

○ 사업기간 : 2002~2004. 5

○ 사 업 비 : 103억원(도비 63, 교부세 10, 국비 30)

※ 부지매입비 제외

☞ 건립부지는 청주시 소유로 체육관건립 후 무상양여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2조) 조건으로 청주시와 토지사용 협의(지방재정법시행령 제89조)를 거쳐 건축

≪종자생산시험장 대체농지 취득≫

○ 위 치 : 진천군 진천읍 성석리 일원

○ 규 모 : 17,000㎡

○ 사업기간 : 2002. 3~2002. 12

○ 사 업 비 : 340,000천원(도비)

5. 검토의견

○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검토한 바**

이는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여 도의 역점사업을 추진하고,
도로 확·포장에 따른 농업기술원 종자생산시험장의 대체농지를 취득하고자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으로,

○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은**

청주시 상당구 주중동 구 종축장 부지에 도민 종합레포츠타운을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조성하기 위하여 제168회 임시회(1999. 12. 15)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에 의하여 부지매입비 160억원과 부지 403,306㎡의 취득을 의결하였으나,

2001년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기간을 2001년부터 2010년까지로,
취득대상토지는 403,306㎡를 312,599㎡로,
부지매입비는 160억원에서 497억원(총사업비 1,378억원)으로 변경하여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로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이나,

○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의 취득대상 토지 면적이

- 당초 403,306㎡에서 312,599㎡로 감소한 사유
- 부지매입비가 당초 160억원에서 497억원으로 337억원 증가 (평당 보상가 130천원 → 515천원) 사유와 재원확보대책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은**

2004년도 제85회 전국체육대회 개최와 체육계의 숙원사업인 투기종목 전용훈련장 확보를 위하여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소재 청주시 소유 부지(충북체고 수영장부지)에 2003년까지 103억원을 투자 연건평 2,800평(부지 1,000평, 지상 5층, 지하 2층) 규모의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하여 청주시로 무상양여 하려는 것으로,

세부적인 사업계획 및 활용방안과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으로 지원하지 않고 건립 후 무상 양여하려는 사유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 **종자생산시험장 대체농지 취득은**

대전지방 국도관리청의 진천읍 - 진천 IC간국도 확·포장공사에 편입되는 종자생산시험장 원종생산포지 12,885㎡(보상액 669백만원)의 대체농지 구입을 위하여 17,000㎡정도의 대체농지(답)를 취득하고자하는 것으로,

대체취득 농지의 지번별 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붙 임 : 2002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